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06
----------	-------

발의연월일 : 2025. 9. 16.

발 의 자 : 조승환 · 곽규택 · 김은혜
배준영 · 김성원 · 서지영
유용원 · 정희용 · 김승수
정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 계약 체결일에는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만 지급하고 전입일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입주하므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기한을 임대차 계약상 잔금 지급일
부터 30일 이내로 함으로써 실제 입주가 완료된 임대차 계약에 대하
여 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계약의 체결일”을 “계약상 잔금 지급일(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u>계약의 체결일</u> 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 ----- ----- ----- ----- ----- ----- <u>-----계약상 잔금 지급일</u> <u>(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일로 한다)</u> ----- ----- -----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